

버겐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는 방법

Michael R. Dressler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판사
(Bergen County Surrogate)

목차

유언 검인	4
유언장	6
요건	7
일반적 고려사항	7
유언장 필요사항	10
유언장 하에서 양도되는 재산	18
유산 조정	19
세무계획	20
연방 유산세	21
뉴저지 유산세	25
뉴저지 양도 및 상속세	25
평생 계획	29
위임장	30
의료관리를 위한 사전 지침	33
위성 사무소	36
유언검인 법원 소개	38
자주 묻는 질문	41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 연락처	47

이 책자의 출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제공해주신 버겐 카운티 변호사협회와 고령자 법
위원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Michael R. Dressler
버겐 카운티 유연검인 판사
(Bergen County Surrogate)

버겐 카운티의 유연검인 판사로서
인사말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연검인 법원의 임무 중에는 유연장의 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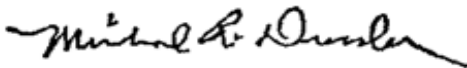
유산관리인 지정, 보호자 임명 관리 및 입양 관리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유언장의 중요성, 유언검인 절차, 변호사, 의료관리를 위한 사전 지침(사전 유언장) 및 의료관리 대리인(의료 변호사)을 포함하여 귀하 및 가족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소개 및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저희 직원 및 제가 고수하는 원칙은 애도 및 가족의 불안정한 기간 중에 유언검인 법원이 경청, 지원 및 안내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언급된 주제 또는 유언검인 법원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언검인 법원의 주소는 the Bergen County Justice Center, Room 211, 10 Main Street, Hackensack, New Jersey 07601-7000 이며, 전화번호는 (201) 646-2252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chael R. Dressler
버겐카운티 유언검인 법원
(Surrogate of Bergen County)



버겐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는 방법

도입

유언검인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뉴저지, 특히 버겐 카운티에서 유언검인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개인의 경우 보통 1시간 이내로 변호사의 도움 유무에 상관없이 유언검인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에 기술한 정보와 서류를 지참하시고 근무일 아무 때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유언검인 법원은 유언검인 절차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은 보통 \$100달러~\$200달러입니다.

유언검인

유언검인은 유언집행자가 고인(유언장을 작성한 고인을 “유언자”라고 합니다)이 유언장에서 지시한대로 재산을 유언자의 유언장에 따라 수혜자(수령인)에게 양도하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자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뉴저지 주 이외의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 시 소유 재산이 버겐 카운티에만 소재하는 경우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합니다.



유언장 하의 재산

유언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대상이 아닌 재산

모든 재산이 수혜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검인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재산은 (법률에 의거) 검인 없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수혜자)에게 양도됩니다. 양도할 특정재산에 검인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타이틀)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소유권이 유언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은행계좌, 주식, 채권, 자동차 등 개인재산과 유언자가 소유한 현금은 유언자의 유언장에 따라 양도되는 “유언검인 대상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보통 유언검인 절차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회사에서는 검인 없이 이 계좌들을 양도할 수 있는 수혜자 지정 양식을 제공합니다.

유언자가 재산 소유권을 생존자의 권리와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경우

유언자와 다른 사람이 생존자의 권리와 함께 공동 소유하는 재산은 “생존자의 권리가 있는 공동 명의”로 소유되며, 법에 의거 유언자의 사망 시 생존 공동 보유자에게 양도됩니다. 은행계좌, 증권 및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유된 재산은 유언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증권계좌 신청서 및 부동산 등기 상 명의를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John Smith 및 Jane Doe, 생존자의 권리가 있는 공동 명의.” 기존 재산의 소유권 변경 시에는 세금 및 기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혜자 지정 재산인 경우

“수혜자 지정 재산”은 보통 유언자가 선임한 수혜자 지정에 의거 양도되는 비유언검인 재산입니다. 생명보험 지급금, 401(k) 플랜, IRA, 직원 사망 보상금 (예; 연금, 이익 공유, 등) 및 “POD(Payable on Death)” 및/또는 “ITF(In Trust For)” 계좌는 보통 수혜자 지정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연금플랜관리자 또는 고용주는 수혜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거나 수혜자를 지정한 재산 소유인의 서명 양식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증권 또는 플랜에 있는 언어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은 귀하의 재산(예: 부동산) 분배방법, 대상, 시기 및/또는 수혜자가 해당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법적 서류입니다. 유언장은 또한 귀하가 유언집행자(유산을 관리하는 사람), 관재인(귀하의 유언장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같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뉴저지 주의 법률에서 귀하의 재산을 누가 수령할 지를 결정해줍니다. 이러한 법률은 “무유언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귀하의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와 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요건

18세 이상이고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유언자)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 시 18세 이상의 사람 두 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가 서명하는 행위는 유언장의 실행으로 규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으로 알려진 손으로 작성한 유언장은 서명과 중요한 조항의 필체가 동일하며 해당 필체가 유언자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수기 작성 서류는 유언검인 법원보다는 대법원에서 검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검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며 왜 타이핑되어 공식적으로 서명한 유언장이 항상 선호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고려사항; 본인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에서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키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대다수는 개인의 상태나 개인적 또는 가족의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뉴저지주에서 유효한 유연장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유연장 문구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서류를 맞춤화해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서류 작성이나 서류 서명에 관련된 상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유연장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작성 및 웹사이트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의 안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연장 갱신

매 3년 마다 그리고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나 귀하가 원하는 바를 계속 반영시키고 현재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록 법에 의거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서류가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가 이혼을 해야 하고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기로 한 유연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은 무유언 법률에 의거 마치 귀하의 이전 배우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처럼 배분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귀하가 원하는 바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귀하가 유언장에 서명한 후에 손으로 변경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언장 관리

또한 서명한 유언장에 표시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기재할 경우 유언장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표시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의 임의의 조항을 변경하고 싶으면, 적합하게 실행된 수정 절차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변경은 “유언 보충서(Codicil)”라고 부릅니다. 유언 보충서는 단순한 변경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이 유언 보충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여러 유언보충서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일치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안전하고 방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복사본 역시 원본의 보관 장소와 같은 지침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 금고는 유언장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금고를 개방할 때 은행 직원이 배석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지명된 유언집행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지명한 유언집행자와 상속자에게 안전 금고용 서명 카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 후 즉시 유언장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일 내에 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지침을 유언장에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지침은 개인 서신 및/또는 사전 유언장(Living Will)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장 필요사항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없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항상 전체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N.J.S.A. 3B:5-3에 의거 생존한 배우자는 고인의 자손이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고인의 모든 생존 자손이 또한 생존 배우자의 자손이며, 고인 사망 후 생존한 배우자의 다른 자손이 없는 경우에만 전체 유산을 상속합니다.

만약 귀하의 가족이 상속 권리를 받을 경우 손상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는 정부 혜택을 받는 특별 보조 아동과 같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특별한 고려사항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언장 하에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구성원의 정부 혜택(SSI 및

메디케이드)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장에 조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시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10일이 될 때까지 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일 기간 내에 유언검인 법원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10일 후가 될 때까지 검인을 위해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유언장에 의거 유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로 지명된 경우에는, 먼저 버겐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언검인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언장 원본 (원본을 낱장으로 풀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사망확인서의 공인 사본 (유언자가 사망한 시 당국의 보건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함), (3) 가장 가까운 생존 가족 (즉, 최근친자)의 성명과 최근 주소, (4) 검인 수수료 지불을 위한 현금 또는 수표 (뉴저지에 주소지를 둔 은행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함), 보증수표 또는 머니 오더. 유언검인 법원에서 미팅을 가질 때까지 수표에 배서하지 마십시오.

또한, 만약 유언장이 “자기 증명(self-proving)” 유언장이 아닐 경우, 즉

특정 문구가 포함된 선서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인 또는 “참관 증인”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 시 입회하는 사람, 하지만 참관 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음)은 반드시 유언검인 법원에 와서 증인의 서명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증명” 유언장은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공증인 또는 뉴저지 주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뉴저지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별 문구를 포함한 선서 진술을 포함하는 유언장입니다. 이 진술을 자기 증명 선서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유언장이 “자기 증명” 유언장일 경우,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할 때 배석하는 공증인이나 뉴저지 주 변호사가 증인의 서명에 대한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유언검인 법원에 와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979년 이후 작성된 양식으로 실행된 대부분의 유언장은 “자기 증명” 유언장입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유언검인 법원의 유언검인 담당 서기나 변호사에게 질문하십시오.

업무 처리 절차

유언검인 법원에 도착하시면, 유언검인 담당 서기가 유언장 원본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작성되고 서명되었으며 증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귀하가 유언장에 서명한 후에는 손으로 유언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오신

유언장이나 항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유언집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서류에 서명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는 유언 집행장(Letters Testamentary)이 발급되면, 잠시 후 “유언검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언검인 담당 서기가 귀하에게 유언 집행장 (또는 유언검인 인증서 또는 “서신”)이 몇 장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유언 집행장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보통 유언자가 수혜자에게 양도할 재산 한 건 당 양각 인장이 찍힌 공증 사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산에 따라 특히 재산이 여러 은행, 중개회사, 연금플랜 및 보험회사에 나누어 보관된 경우, 유언 집행장이 여러 장 필요합니다. 유언 집행장은 또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비용은 한 장당 \$5달러입니다.

유언집행자들은 나중에 더 구매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유언집행장을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장은 발행일로부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 발급된 유언집행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회사에서는 30~60일 내에 발급된 유언집행장을 요구합니다. 약 7 영업일 후에 유언검인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유언집행장, 고인의 유언장 사본과 뉴저지 유산 및 양도

상속세에 관한 일반 정보 브로셔 및 “유언장
검인 통지서”에 관한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일단 검인 판결이 내려지고 유언집행장이
발급되면, 유언장은 “검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언집행장과 함께
유언집행자에게 발송된 “유언장 검인 통지서”에
적용되는 법원 명령서의 사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법에 의거, 유언집행자는 모든
수혜자들과 최근친자들에게 유언장이
검인되었으며, 유언장 사본을 요청 시 볼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유언집행자의 성명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는
유언장이 검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 통지는 수령
영수증이 필요한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각 서신의 사본과 수령인
각자가 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배달
증명 우편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언집행자는 유언검인 법원에 “유언장
검인 통지서 우편 발송 증빙서”를 각 “유언장
검인 통지서 우편 발송 증빙서”의 페이지 당
\$5.00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

검인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고인의 재무 문제와 유산 정리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재산 수집(예; 보험금 수익자가 유산 수혜자인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 일시적인 현금 투자, 기록 관리(모든 청구서, 수표 장부, 명세서 사본 등), 부채 상환 및 비용 지불과 같은 재산 관리, 유산세, 소득세, 상속세 및 기타 세금 계산 및 납부를 한 다음, 유산의 재산을 유언장의 조건에 의거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언집행자의 임무입니다. 필요할 경우, 유언집행자는 변호사 및 때로는 회계사, 투자상담사 및/또는 부동산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로부터 도움 및 조언을 받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는 특히 비검인 재산이 유언집행자가 계산,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사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집 대상 비검인 재산(예; IRA, 생명보험 등)의 수혜자는 물론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상속자들을 조정하고 지원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검인 유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언집행자는 유언자를 대신하여 관리기간 중에 유언자의 재산을 수집, 관리 및 배분합니다.

유언집행자 수수료

유언집행자는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 의거, 유산의 집행자는 보통 다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수수료는 “유언검인 재산” 및 유언집행자에게 의뢰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a. 모든 유산 소득의 6.0%,
- b. 유산의 5.0% (최대 \$200,000 달러),
- c. \$200,000 초과 시 3.5%, 최대 \$1,000,000;
- d. \$1,000,000 초과 시 2.0% 또는
상급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비율

유언집행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또는 유언집행자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수수료를 수락하지 않을 수도(예; 면제)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 결정은 유산 재산의 배분과 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취하지 않는 세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한 후에만 내려야 합니다.

양도확인서 및 반환채권

유산의 부채와 세금을 지급하고 나면 유언집행자는 최종 배분을 진행할 준비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각 수혜자가 “양도확인서 및 반환채권”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반환채권을 실행함으로써 그에게 배분된 재산이 나중에 유산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수혜자는 유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수령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즉, 반환)해야 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언집행자는 나중에 유산을 청구하는 드문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양도확인서는 유언집행자가 배분을 했고 수혜자는 유산을 수령했음에 대한 증빙입니다. 유언검인 법원은 양도확인서와 반환채권을 결합한 샘플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 실행된 양도확인서와 반환채권(공증인 앞에서 실행)을 유언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유언자의 유산에 대한 각 수혜자로부터 실행된 양도확인서 또는 양도확인서 및 반환채권 중 하나를 확보하여 유언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책자의 의견은 유언검인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만을 보여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버겐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변호사, 회계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조건을 구해 검인절차를 밟기 위한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하에서 양도되는 재산

유언장 하에서 양도되는 모든 재산은 검인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자의 권리와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은행계좌는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명의인에게 양도됩니다. 또한, 완전하게 명의자로서 혼인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됩니다. 생명보험증권, IRA's, 연금 및 401(k)'s는 수혜자 지정 양식을 통하여 수혜자를 지정하는 재산의 예이며 따라서, 유언장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중개회사에서는 정규 계좌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하는 양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귀하 단독 명의로 또는 “공동보유자(tenants in common)”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고 계약상 양도되지 않는 재산만이 귀하의 최종 유언장 조건에 의해 양도됩니다. 이 사실을 계획 단계에서 처리하여 귀하의 유언장이 오직 재산 일부에 대한 분배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원하는 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록과 함께 작성된 모든 수혜자 지정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은행 및 중개회사에서는 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산 조정

뉴저지 주에서 유산 조정 절차는 유언장 유무에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개인 대리인은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 가서 유산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서 지명한 유언집행자가 개인 대리인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개인 대변인은 보통 가족 구성원이며, 관리인 (Administrator) 으로 부릅니다. 뉴저지 주 법률에서는,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 배우자가 관리인으로서의 최우선 지명인이며 그 뒤를 자녀, 손주, 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관리인 역할을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 가족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모든 자녀가 관리인 역할을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리 포기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언장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유언검인 법원에서 관리인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자에게 “보증증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리인은 보증증서를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증서는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재무계약에 특화된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회사는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의 특정 부당행위에 대하여 상속인에 대한 보증을 드는 재무계약입니다. 이 방법은 유언검인 및 주 법률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수 백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증서 프리미엄 비용은 유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서 프리미엄이 유언장 작성 비용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서는 유산이 정리될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에게 증서가 필요없다면 (증서 요건 “면제”) 이는 유언장 작성이 유리한 주요 장점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계획, 증서 프리미엄 비용 회피,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작성했음을 알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유산의 분배 절차를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계획

유언장, 세금 등의 중요성

뉴저지 주에 있는 고인의 유산은 연방 및 뉴저지주 유산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산으로부터 상속받는 수혜자들은 뉴저지 주의 상속세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재산과 함께 적절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조세채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유언장, 신탁재산, 유산 계획을 경험있는 변호사가 작성하도록 맡길 것을 권유합니다.

잠재 조세 채무

뉴저지 주의 고인이 남기 유산과 수혜자에 적용되는 조세 채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 유산세, 뉴저지 주 유산세 및 뉴저지 주 상속세가 세 가지 세금입니다. 연방 유산세와 뉴저지주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뉴저지 주 상속세는 상속받는 고인의 혈연관계나 유산세 하에 상속받는 기업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므로 유산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를 활용하여 유언장, 신탁재산, 유산세 신고서 및 유산계획을 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연방 유산세

2012년 12월 31일에 ‘2010 조세감면법’이 만료되고, 2013년 1월 2일에 2012년 미국 조세감면법(‘2012 조세감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없었다면 연방 유산세가 2003년 및 2001년 이전 수준(각각 총 면세금액 \$1,000,000 달러 및 최고 세율 55%)으로 환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연방 유산세에 영향을 주는 2012 조세감면법의 결과로서, 예전에는 임시로 적용되었던 일부 특성이 영구히 적용되고 예전의 법률에서 장기적 유산세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기타 특성들이 연장됩니다.

만료가 예정되었지만 신규 법률에 의거 존속하게 되는 한 가지 특성으로서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유산세 면제(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 DSUE) 금액의 승계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특성입니다. DSUE 금액의 승계는 유족으로 배우자가 있는 고인의 유산과 관련하여 선택할 사항으로서, 생존 배우자에게 생존 기간 및 사망 시에 고인의 미사용 유산세 면제 금액을 자신의 양도 건에 적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2 조세감면법은 주 유산세, 상속세 또는 유증물세의 공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또한 별도 만료 규정이 없는 한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GST) 관련 요건도 계속 유지합니다. 반대로 이 법률에서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유산에 대한 5% 누진세는 폐지하였습니다.

2012 조세감면법이 통과됨으로써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및 면제금액은 통합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방 유산세 면제금액이 \$5,000,000 달러로 조정되어 최고 세율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면제금액은 내국세법 섹션 1(f)의 표준 공식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GST와 관련하여 최고 세율을 40%로, 면제금액은 \$5,000,000 달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뉴저지 유산세는 각각 고인 사망 후 9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세금은 고인 사망 시점에 유산의 순수 가치(모든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이후의 유산 가치)에서 해당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이 법률은 여기 기재된 내용보다 실제로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 시 주택을 증여하지만 주거 권리는 계속 유지할 경우 (“종신 물권”이라고 함) 그 주택의 가치가 유산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여타의 많은 권리가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를 유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유산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면제 적용 금액과 최고 세율은 고인의 사망 연도에 유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법률에 따라 변하므로 1백만 달러 이상의

상당한 유산을 보유한 사람은 변호사 및/또는 유산세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제 적용 금액 미만으로 보이는 유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는 주의하여 최소한 유산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유산이 실제로 연방 유산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방세와 대부분의 대규모 유산에 수반되는 법적, 개인적 복잡성 때문에 순 재산이 1백만 달러(주택, 생명보험, 연금 및 기타 모든 자산의 순수 가치 포함)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또는 합산 금액이 동 액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부)은 뉴저지 변호사나 유산세 계획 전문 회계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산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유산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0 ~ \$3,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유산세 공제 측면에서 매우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재산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에게는 큰 금액의 유산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언장, 증여 조항이 있는 지속적 위임장을 적절히 작성하고 기타 계획 단계를 거침으로써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모든 유언집행자들은 최소한의 조치로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인 사망 시점의 법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저지 유산세

2002년 뉴저지 주는 N.J.S.A. 54:38-1 et seq. 에 의거 유산세를 개정했습니다. 뉴저지 주 유산세는 복잡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인이 2001년 12월 31일에 사망한 것처럼 고인의 연방 유산세 면세 임계치를 활용합니다. 이 당시 연방 유산세 면세 금액은 \$675,000달러였습니다. 만약 유산의 가치가 \$675,000달러를 초과한다면, 뉴저지 주 유산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저지 양도 및 상속세

위에 언급한 뉴저지 주 유산세에 추가하여, 뉴저지 주는 또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뉴저지 주의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에 대한 면세

대부분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고인의 유산이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 또는 의붓자식에게 양도되는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이 수혜자들은 “클래스 A” 수혜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고인이 자선기관, 교육기관, 교회, 병원, 도서관 또는 뉴저지 주나 정치부문에 돈을 남기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500달러 미만의 고인의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수령인

만약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 사위 또는 며느리와 같은 다른 가족에게 양도한다면, 처음 \$25,000달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공제 적용). 나머지 상속금액은 현재 \$1,075,000달러까지 11%로 과세되며 이후 세율은 13%에서 16%까지 적용됩니다.

다른 모든 수혜자들(위에 정의된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처음 \$700,000달러에 대해 15%,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 16%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재산 양도 시 승인 필요

일부 재산(부동산, 주식 및 은행계좌)은 양도 전에 뉴저지 주 과세부 이사관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는 보통 면제확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제확인서는 보통 자동차, 가구용품과 같은

개인 재산 및 보석, 대부분의 직원 혜택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75,000달러 미만의 가치를 지닌 유산을 “클래스 A” 수혜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주, 조부모 또는 의붓자식) 에게 남기고 2001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실행 면제 확인서, 양식 L-8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 주식 및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실행 면제 확인서는 해당 재산이 있는 은행, 금융기관 또는 브로커에게 제출합니다.

부동산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 사망하고 \$675,0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클래스 A” 수혜자에게 남긴 고인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보통 양식 L-9, 부동산 세금 면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습니다. L-9 양식은 트렌톤의 상속 및 유산세 사무소의 개인 세금 감사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소유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L-9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산은 어느 때나 양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만약 고인이 “클래스 A” 수혜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식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양식은 **Individual Tax Audit Branch, Inheritance and Estate Tax, New Jersey Division of Taxation, P.O. Box 249, Trenton, New Jersey 08695-0249**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반 (609) 292-5033으로 전화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 상속세 신고서가 필요하다면, 고인의 유언장과 모든 수정사항(유언보충서), 고인의 지난해 연방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 사본,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공증 수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식 세금 신고서는 고인의 사망 후 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8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며 납부될 때까지 세금 신고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만료일은 연방 및 뉴저지 주 유산세 신고서 만료일보다 한 달 빠릅니다.

세금 납부자

또한 유언자는 유언장에서 수혜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유산의 자산에서 세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해당 세금을 각 수혜자의 몫에서 비율별로 납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산을 형제나 자매 및/또는 조카와 조카딸에게 남기는 개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유형 개인 자산

유언장에 유형 개인 자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유형 개인 자산은 보석, 가구 및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주식 및 채권은 유형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뉴저지 주 법에 의거 유언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유형 개인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 목록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등록 유형 개인 자산은 해당 목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유언장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 목록은 변호사나 증인이 없이도 원하는 만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 취급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하십시오.

평생 계획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산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들이 장기 요양에 대한 필요를 비롯한 노령화, 질병 또는 무력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그리고 관리 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평생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향후에 발생 가능한 불능 또는 부재(예; 장기간 출장)에 대비한 사전 계획에 지정인에게 귀하를 위한 법적, 세무적 및 금융 문제를 취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계속적 대리 위임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대리인(attorney-in-fact)” (또한 “에이전트”)이 모든 금융문제를 취급하게 하여 일반적인 권한이 되게 하거나, 또는 권한 부여자 (“본인”)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 대리 위임장은 권한 부여자의 향후 불능 상태 시 명시적으로 그 기능을 계속합니다. 해당되는 불능의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임장은 취소가능하며, 오직 본인의 일생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작성되면, 계속적 대리 위임장은 향후 권한 부여자의 불능을 선언하는 비용이 드는 법정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성된 계속적 대리 위임장이 없다면, 불능이 된 사람을 대신할 보호자를 지명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위임장은 법정 절차를 피하여 시간과 금전을 절약함은 물론, 뉴저지 주 법률과 법원이 선정할 수도 있는 사람

대신에 당사자 본인이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적 대리 위임장에 관하여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임장에서 에이전트(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남용이나 오용의 소지가 높습니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최초 선택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경우, 상속자의 대리인 선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자의 대리인도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고 적격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같은 여러 기관에서는 재산을 관리할 권한에 대한 특정 진술을 위해 위임장 서류를 요구합니다. P.L. 1991, Chapter 95 (N.J.S.A. 46:2B-11)의 Section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임장 서류에는 특정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서류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각 권한과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정부채권 매매, 본인의 안전금고 개방, 신탁 설립, 양도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 제출 권한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권한의 범위는 무제한의 양도를 수반할 수도 있는 불리한 재무 및 세금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에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하는 권한을 특정 사람이나 특정 금액으로 제한하여 재산이 너무 많이 양도되는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 혜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 또는 불필요한 유산 및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보존하는 양도 권한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다른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위임장에서 대리인이 귀하의 은퇴연금 계정, 보험 및 기타 재산의 수혜자를 변경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리인이 귀하의 유산계획 대부분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각 권한의 영향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표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식에 서명하게 되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 대리 위임장은 증인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을 공증해야 합니다. 이 때 증인은 본인이나 대리인과 혈연 또는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의 유산 또는 당사자 본인의 유언장에 의한 수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의료관리를 위한 사전 지침

의료 지침

모든 성인은 임종 절차를 단지 늘리기만 하는 인공, 임시 또는 최후 수단의 치료를 활용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자신을 위한 의학적 치료를 통제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통 권한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 의사나 시설에서 해당 환자에게 치료를 제안할 때 그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 (또는 철회)함으로써 실행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에 의사와 의사교환을 할 정신적 기능 또는 신체적 능력을 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학적 진료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가 없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N.J.S.A 26:2H-53 에 의거 해당 환자가 결정을 내릴 역량을 결여하게 될 때 의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불구가 되는 질병이나 사고 이전에 의료관리에 대한 사전 지침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지침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 명의 성인이 증인을 서거나 공증인이 인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을 때 건강관리에 관한 개인의 바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환자의 주치의나 병원에 제출한 다음 해당

환자가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 유효하게 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치의의 판단은 다른 의사에 의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나중에 의학적 결정을 내릴 능력을 회복하면 다시 귀하가 직접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의료지침은 해당 본인이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의료지침은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개인이 언제라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침이 귀하의 바램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처리되어야 하는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료지침은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지침 - 건강 관리 대리인 지명

귀하의 향후 의료 진료를 관리하는 또다른 방법은 귀하가 신뢰하고 귀하의 건강관리 상 바램을 이해하며 귀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불리는 이 지명인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귀하가 의료진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을 때 귀하를 위해 의료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불능상태가 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 귀하가 선택한 대리인(또는 “의료관리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대리인은 귀하가 귀하의 바램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의사 및 귀하의 치료를 책임지는 사람과 논의합니다. 의료관리 대리인을 지명하는 대리인 지침이 뉴저지 주에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침이 해당 지명을 이해 사용됨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문구점, 할인마트 및 서점에서 판매하는 의학적 위임장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문가의 감독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 지침은 의료지침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개인이 증인을 서거나, 공증인 앞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하게 작성된 대리인 지침은 다른 중요 법적 서류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 사본을 의사, 가족 및 친구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원본 서류는 바로 볼 수 있게 해야하고 그 소재를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지침이나 대리인 지침을 보관하는데 안전 금고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안전 금고는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면 꺼낼 수가 없습니다.

위성 사무소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1999년 저는 버겐카운티 최초로 납세자의 추가 비용없이 운영되는 유연검인 법원의 위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버겐 카운티의 여러 지역을 위해 선택된 장소에 10개의 위성 사무소를 배치하여 버겐 카운티 주민 여러분이 유연검인 법원의 서비스를 가능한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성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려면, 버겐 카운티 유연검인 법원 (201)646-2252로 전화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 주십시오.

**Bergen County Surrogate's Court
Bergen County Justice Center
10 Main Street – Room 211
Hackensack, NJ 07601-7000**

유연검인 법원의 직원이 유연장을 검인하거나 관리인을 지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개인은 다음 “위성 사무소” 장소 중 어느 곳에서나 유연검인 법원의 담당자와 약속을 정하여 만나실 수 있습니다.

Cresskill, Municipal Building
Emerson, Municipal Building
Fair Lawn, Municipal Building
Fort Lee, Senior Citizens Center
Norwood, Borough Hall
Park Ridge, Borough Hall
Ridgewood, Municipal Library
River Vale, Municipal Building
Rutherford, Municipal Building
Wallington, Borough Hall

지원 활동

저는 취임 이후에 버겐 카운티의 모든 타운을 순회하면서 전례 없는 강연 여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서비스 조직과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유언장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산, 미성년자 보호, 입양, 생존 유언장 및 유산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6 만여 명의 카운티 거주자를 만나 유언검인에 관해서 알리고 유언검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설명회는 보통 20 분 정도 진행하고 그 후에는 유언검인, 관련 문서 및 유언검인 법원의 서비스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드립니다. 이러한 강연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및 친구들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도와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버겐 카운티의 단체, 협회 또는 조직을 위해 강연 일정을 정하고 싶으시면 유언검인 법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유언검인 법원 소개

뉴저지에서 유언판사(Surrogate) 업무의 기원은 식민지 시대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법률 사무소 대부분이 영국의 법률 및 관행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언판사 사무소의 기원이 영국 교회가 개인의 유언장 공증 업무를 수행했던 시기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유산을 처리할 때 주교가 바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대리인(Surrogate)을 지정하여 그들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인 (Surrogate)”이라는 단어는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Subrogare”에서 유래합니다.

유언판사는 뉴저지 헌법에 근거한 법적 공직으로서 법원을 관리하는데 영국 보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뉴저지 헌법이 정하는 3 개의 공직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주내 21 개 카운티의 치안 담당관(Sheriff) 및 카운티 서기(County Clerk)이 포함됩니다.

1822 년에 뉴저지의 법률이 개정되어 (주지사가 아닌) 주 의회가 카운티 유언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844 년에 뉴저지 헌법은 유언판사를 카운티의 독립적 법정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부주지사 또는 의회의 피지정인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44 년의 헌법은 해당 카운티 주민이 5 년 임기의 유언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150 여 년 동안 버겐 카운티의 주민들이 카운티 유언판사를 선출해오고 있습니다. 1844 년에 제정된 법률 덕분에 오늘날 카운티 유언판사의 임무가 확대되어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언검인 법원의 판사이자 서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유언판사는 유언장 유무에 관계 없이 자신 단독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모든 버겐 카운티 주민의 유산에 대한 수탁자(예: 유언집행자, 및/또는 유언 신탁관리자, 보호자 또는 관리인)를 지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2. 상급법원 형평법부 유언검인 부문의 부서기 역할을 수행하는 유언판사는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유언장 이의제기, 유산 문제, 계산, 의사무능력 성인의 판정, 의사무능력 판결을 받은 성인에 대한 후견 및 모든 입장을 위한 소송 절차에 관한 모든 법적조치를 등재하고, 심리하고 일정을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의 사안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에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유지관리합니다.

또한 유언판사는 주로 버겐 카운티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버겐 카운티에서 수 백만 달러의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유언검인(Probate)이 무엇입니까?

유언검인은 유언장을 입증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장에서 고인(유언장을 작성한 고인을 “유언자”라고 함)의 지시대로 재산을 수혜자(수령인)에게 양도하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유언검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업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2. 유언장을 유언검인(공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언장을 공증하려면 유언자가 거주했던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유언장을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에서 공증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자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였음.

2. 사망 시에 배타적으로 버겐 카운티에 자산을 소유했던 타주 거주자.

3. 유언장을 공증하려면 무엇을 지참해야 합니까?

1. 고인의 (양각 인장이 날인된) 공인 사망 증명서 사본.

2. 유언장에서 수혜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직계 친척(예: 생존 배우자, 생존 가족 및 가장 가까운 친척)의 성명과 최근 주소.
3. 고인의 유언장 원본.
4. 고인의 유언 공증에 대한 유언검인 법원의 법정 수수료 준비.

중요한 참고사항 #1: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오로지** 원본 유언장만 공증할 수 있고, 뉴저지의 상급법원만이 개인의 유언장 사본에 대한 유언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2: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지급 보증 수표를 제외한 **타주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 수표는 뉴저지 은행에서 뉴저지 주소를 기입하여 발급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또한 지급인의 전화번호를 수표에 기입하거나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3: 공증을 위해 가져온 유언장 또는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은 되돌려주지 않으며, Hackensack에 있는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에 보관됩니다.

4. 내가 유언장에 기록이나 기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까?

귀하와 증인이 서명한 후에는 유언장 내용을 수기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유언장에 기록을 하면 유언장이 무효화됩니다.

5. 유언장을 공증해야 합니까? - 또는 - 언제 공증이 필요합니까?

양도할 특정 재산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권리) 보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또는 한 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고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 유언집행자로 (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관리인으로) 지명되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유언검인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은행 계정, 증권, 차량, 부동산 등)이 유언자와 다른 사람이 “생존자의 권리가 있는 공동 명의”(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결혼한 커플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Joint Tenants By the Entirety)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유언장 범위를 벗어나는 유언장 401(k), IRA, 생명보험 수입금 및 기타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혜자 지정 재산”은 유언자의 수혜자 지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 없는 재산입니다. 생명보험 지급금, 401(k) 플랜, IRA, 직원 사망 보상금(예; 연금, 이익 공유, 등) 및 “POD(Payable on Death)” 및/또는 “ITF(In Trust For)” 계좌는 보통 수혜자 지정 재산입니다

7. 나의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모든 유언장 원본은 안전하고 방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복사본 역시 원본의 보관 장소와 같은 지침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1: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원본 유언장에 대해서만 유언검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언장 사본은 뉴저지의 상급법원만이 유언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2: 귀하가 사망할 때 누구도 귀하의 유언장을 찾지 못할 경우, 법률은 유언장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안전 금고는 유언장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금고를 개방할 때 은행 직원이 배석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지명된 유언집행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지명한 유언집행자와 상속자에게 안전 금고용 서명 카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 후 즉시 유언장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일 내에 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에 관한 지침을 유언장에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 지침은 개인 서신 및/또는 사전 유언장(Living Will)에 기재해야 합니다.

8. 나의 유언장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유언장의 임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개정 작업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개정을 “유언 보충서(Codicil)”라고 부릅니다. 유언 보충서는 단순한 변경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여러 유언보충서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일치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9. 내가 뉴저지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유언장이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10. 보증증서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보증증서(Surety Bond)는 누군가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관리인을 제외한 채권자 또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을 보호해줍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률은 유산 관리인에게 보증증서를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11. 몇 부의 유언검인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동일한 일자에 인증서를 받습니까?

고인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는 데 충분할 만큼 많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놓쳤을 수 있는 사항에 사용하기 위해 한 두 장의 인증서 여유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주식 양도의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에 따라 유언검인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불과 30~6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 가장 가까운 친척이 수혜자가 아닐 경우에 그들을 기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언장이 없을 경우 그들 중 일부가 관리인 임명을 포기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데 상급법원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나중에 무효화될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법정 상속인)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 반환채권 및 양도확인서가 무엇입니까?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유산을 최종 분배하고 나면 수혜자가 양도확인서(Release) 및 반환채권(Refunding Bond)에 서명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가 유산을 받았음을 입증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부의 경우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유산을 부분적으로 분배할 경우 부분적 분배를 나타내는 부분 양도 확인서 및 반환채권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반환 부분의 의미는, 분배 후에 합법적 청구서가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시될 경우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수혜자가 유산에서 충분한 금액 또는 전부를 유언집행자나 관리인에게 반환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14. 유산이 소액일 경우 유언장의 공증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소액 유산 진술서(Small Estate Affidavit)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언장은 여타 모든 문서에 우선합니다. 소액 유산 진술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에만 적용되며, 그 가치가 특정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고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배우자 유족이 있는 경우(각각 \$20,000 또는 \$50,000 달러)에만 해당됩니다.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 연락처



버겐 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은 모든 근무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전화 (201) 646-2252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무소 주소는 Room 211 of the Bergen County Justice Center, 10 Main Street, Hackensack, New Jersey 07601-7000입니다. 방문하실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bergencountysurrogate.com.

메모

메모

메모